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박미경-

바쁜 일상 속에서 매월 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대외홍보지 「언론  사람」을 통하여 짧게나마 휴식 시간을 가지며 많은 정보를 얻고 많이 소통하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늘 좋은 소식 많이 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 김희은-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던 한가로운 어느 날의 오후를 「언론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과거 「언론  사람」을 보면서 건강상식과 명사의 인터뷰 등을 흥미 있게 읽던 저에게 오늘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SNS를 친숙하게 사용하던 저 또한 SNS에 떠다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기사화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읽어보면 기자분들 또한 SNS에 게재된 이야기만 보고 기사를 쓰셨을 거라 생각되었는데 이 내용들이 확인된 사실일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6월호엔 이에 대해서 구율화 변호사님이 깔끔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주셔서 조금 더 흥미로운 「언론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알찬 정보로 가득한 「언론  사람」 기대할게요.

## BOOK



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2014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언론 관련 민사판결 159건에 대한 통계 분석과 주요 판례 32건을 수록한 「2014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통계분석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청구취지를 분석해 선호되는 피해구제방법을 살펴본 결과,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가 121건(42.6%),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경우가 117건(41.2%)으로 나타났다. 매체유형별 소송 건수를 보면 인터넷매체가 전체의 46.1%인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간신문 67건(23.6%), 방송 44건(15.5%)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언론조정 사건의 44.3%가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분쟁이 인터넷매체를 상대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하나의 경향으로 굳어지고 있다 하겠다.

원고 승소 여부를 중심으로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사건의 원고승소율은 52.8%로 집계됐다. 매체유형별로는 방송을 피고로 한 사건이 50.0%의 승소율을 보인 반면, 일간신문을 피고로 한 경우, 원고승소율이 29.9%에 그쳐 차이를 보였다. 참고로 법원은 판결을 통해 방송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높게 요구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사건 262건 중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95건을 살펴보면 인용액 평균은 약 885만원, 중앙값은 700만 원으로 나타났고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액수는 1,000만 원이었다. 작년 사건 중 손해배상 최고 인용액은 40,495,800원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유치원 소속 교사가 원생을 학대하였다는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및 재산권 침해가 인정된 사안이었다.

재판이 이루어진 사건 중 위원회를 거쳐 간 사건은 얼마나 될까? 작년 한 해 동안 위원회 조정을 거쳐 간 사건은 97건으로, 전체건수(분석판결 총 159건을 매체별/청구권별로 재분류하여 451건임)의 21.5%로 나타났다. 이를 위원회 조정결과별 원고승소율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정을같은하는결정이 내려진 사건 26건의 원고승소는 19건으로 73.1%에 달했고,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진 사건 60건의 원고승소는 34건으로 56.7%를 나타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작년 3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 확인' 결정문도 수록했다. 본 보고서가 현직 언론인들과 법조인들뿐 아니라 위원회 직원들에게도 늘 옆에 두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길 기원해 본다.

박은영(교육콘텐츠팀)

